



교훈  
정직(正直)  
근면(勤勉)  
봉사(奉仕)

# 가정통신문

학산중학교  
2025년 5월  
인성인권안전부

정읍시 학산로 89

www.haksan.ms.kr

☎ 570-1620(인성인권안전부실)

FAX 570-1688

## 일과시간 중 무단 외출 금지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생들의 무단 외출이 잦아져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있어 본교 학생생활규정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일과시간 중 학생의 무단 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무단 외출 금지 및 안전 수칙 관련 본교 규정>

#### 제2조[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행동]

- ⑨ 학생은 교내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다.  
⑩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 학생들의 무단 외출로 위험한 상황 목격,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례로

1. 무단 외출 중 교사를 멀리서 목격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무단 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 상황 발생
2. 외부 음식물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위법 행동 시도 사안 발생
3. 무단 외출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SNS 업로드로 인한 사안 및 민원 발생
4. 무단 외출 후 흡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 목격 민원 등이 있습니다.

### □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자발적 노력의 중요성

무단 외출한 학생의 경우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구분 '기타 33' 항목으로 해당 학생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교내봉사와 사회봉사의 징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학교 규칙 위반 학생에게 자발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징계를 떠나 학생 스스로가 무단 외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교칙을 지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꼭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통해 증명서류(외출증 등)를 지참하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학교도 학생자치회를 통한 캠페인 활동, 무단 외출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한 학부모 협조 요청, 담임의 조회 및 종례 시간을 활용한 안전 지도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교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일과시간 중 카드 사용 내역 알림이 오는 경우 확인하시어 가정 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5. 9.

학 산 중 학 교 장

